

토론 문서
(Discussion Paper)

 **ACT 다문화주의 장관급 자문위원회
(Ministerial Advisory Council for Multiculturalism)**

2023년 2월

Community Services Directorate

**ACT 다문화주의 장관급 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 for Multiculturalism)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2023년 다문화법(Multiculturalism Act 2023) 도입에 따라 새로운 ACT 다문화주의 장관급 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 for Multiculturalism,이하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의 역할, 위원 수 및 선임 절차는 발의된 다문화주의 법안에 대한 이전 협의를 기반으로 이미 협의되었으며 ACT 내 기타 자문위원회와 일치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를 마련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위원 구성 및 대표**
* **지역사회 교류**
* **책임 및 투명성**

**1. 위원 구성 및 대표**

***질의 사항:***

1. **위원 선출 시 고려될 수 있는 특정 전문 분야가 있나요?**
2. **소외, 신규 및 신생 지역사회들이 위원회 또는 지역사회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제안 사항:***

위원회의 주 목적은 ACT 내 다양한 문화 및 언어 공동체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세대의 이민자와 가족(영구 또는 임시 비자 및 기술 비자 소지자, 가족 및 인도주의적 이민자, 유학생 또는 망명 신청자 포함)
	+ 영주권자 또는 이민권자
	+ 연령대
	+ 능력
	+ 성적 특징
	+ 성적 정체성

또한 다문화 장관은,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책임과 능력을 입증하는 개인을 위원 선출 시 고려할 것입니다.

* + ACT 내 다문화주의 인식 증진
	+ 다문화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공헌
	+ 문화 또는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한 현대 및 지역 문제 이해
	+ 캔버라 내 다양한 문화 및 언어 공동체와의 **교류** 및 **진솔한 협의 주선**
	+ 포용적인 지역사회 구축
	+ 지역사회 개선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 지역사회 견해를 전달하여 이를 **ACT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 그리고
	+ 행동강령에 따른 위원회 활동에 전적인 참여

**2. 지역사회 교류**

***질의 사항:***

1.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려면 위원회가 지역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해야 하나요?**
2.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마련돼 있어야 하나요?**

***제안 사항:***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초안은 관계성 및 교류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치를 반영하며 위원들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다문화 장관과 함께 **매년 1회의 지역사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견해, 요구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체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해당 내용을 다문화 장관에 전달합니다.
* **커뮤니티 협의에서 나온 메세지들이 다문화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 **수행한 협의에 대해 위원회와 장관에 보고**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그룹이 표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 **참여 대상 그룹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다문화 장관과 공유합니다.

**3. 책임 및 투명성**

***질의 사항:***

1. **위원회가 더욱 투명해지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를 위해 위원회가 마련해야 할 다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2. **위원회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다문화법과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해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안 사항:***

다문화법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투명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다른 보고 메커니즘을 수행하도록 제안합니다.

* **이해관계자 교류 계획(Stakeholder Engagement Plan)** 개발 및 발표
* 제안 활동을 포함한 **연례 계획(Annual Plan)** 개발 및 발표
*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ons Plan)** 개발 및 발표
* 각 미팅 후 **논의된 주요 이슈 및 계획된 조치 개요** 발표
*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에 참여**하여 위원회 업무, 각 위원의 역할 및 다문화법의 중요성을 홍보. 위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캔버라가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도시가 되는 것과 관련해 질문하고 우려되는 문제를 다문화 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는 'Ask the Minister' 양식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할 것입니다.
* **기타 장관 자문 기관** 및 관련 ACT 정부 기관과 협력.

**배경**

***목적:***

2023년 다문화법(Multiculturalism Act)에 따라 새로운 ACT 다문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본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 및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 요구 및 우려 사항들에 관한 자문을 다문화 장관에 전달합니다.

다문화법은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구성 및 선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2021년, 2022년에 진행된 지역사회 협의회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에 대한 자문을 다문화 장관에 전달합니다:
	+ 다음에 대한 전략을 포함한 다문화주의 증진 방법: ACT 정부 자문 절차 내 지역사회 참여 증대; 캔버라 내 다양한 문화 및 언어 배경의 공동체들의 장벽 완화;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환대 및 포용.
	+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지속성 및 유효성; 위원회는 ACT 정부가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시행할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요구가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ACT 내 개인 및 기관들과 다문화주의 증진에 관해 논의하고 ACT 내 다양한 지역사회들의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대해 배웁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다양한 문화, 성별, 연령, 거주,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고, 캔버라에 거주하며 이민자 세대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위원 수는 기타 입법 위원회(legislated council) 구성과 지역사회 협의회에서 제공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가능한 한 문화와 언어적으로 다양한 ACT 지역사회를 대표할 것입니다.

***선임:***

*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 신원보증인 정보를 제공하여 능력 기반 선발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들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개별적으로 선임됩니다.
* 위원들은 3년 임기로 임명되며, 최대 2번의 임기(누적)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장관은 특정 위원이 회의에 2번 연속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ACT 보상 재판소(ACT Remuneration Tribunal) 결정에 따라 급료를 받게 되며 ACT 정부 직원의 사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CT 정부는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23년 다문화법(Multiculturalism Act 2023) | Acts](https://www.legislation.act.gov.au/a/2023-3/) 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견해 보고서(listening report)는 [ACT 다문화주의 장관급 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 for Multiculturalism) | YourSay ACT](https://yoursayconversations.act.gov.au/multiculturalism-advisory-council)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위원회의 운영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우선순위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하므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이 다문화 공동체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ACT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는 일반적인 지역사회와 비교하여 ACT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여러 도전과 장벽을 경험할 수 있는 신규 및 신생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 중요 부문에 있어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초안은 다음 링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ACT 다문화주의 장관급 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 for Multiculturalism) | YourSay ACT](https://yoursayconversations.act.gov.au/multiculturalism-advisory-council)

#